

## 가정폭력에 기인하여 배우자를 살해한 여성 재소자의 심리특성에 관한 연구

이수정  
경기대학교

일반적으로 여성 살인자에 대한 사회의 이미지는 ‘정신이상(madness)’에 의한 것과 ‘사악하거나 못된 여성(badness)’으로 이분화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여성들에 의한 살인의 일정량은 남성에 의해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아온 경험을 가진 여성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청주여자교도소에 남편살해로 현재 수감된 133명의 수감자 중 82.9%가 피학대 경험이 있었으며 이 중 44.5%는 남편살해의 직접적인 범행동기가 피학대경험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에게 있어 남편에 의해 발생되는 위험요인이 어떤 것들이며 학대가 어떤 심리적 변화를 야기하는지 확인하였다. 결과 분석에서는 본 연구에 참여하였던 남편살해 여성들의 피학대 강도와 그로 인한 위험요인은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로 인한 심리적 문제도 심각하였는데, 이들은 높은 수준의 건강염려, 불안 우울증, 자살관념과 함께 높은 수준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편살해 여성들의 공격성은 언어적 공격성을 제외하고는 일반 성인의 수준이었다. 이런 결과는 남편을 살해한 여자들은 매우 공격적이라는 일반적인 시각과는 불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결혼기간과 학대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심리 장후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오랜 기간 학대받은 여성들에게서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학대받은 아내들이 단순한 정신착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해하는 것이기 보다는 생명에 대한 다양한 위험요인들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요어 : 학대받은 여성, 과잉위협지각,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공격성

배우자 폭력은 모든 사회경제적 계층, 인종, 민족 집단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서 특히 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 배우자 살인사건은 배우자 폭력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 중에서도 가장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2004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된 수형자 531명 중 133명이 남편살해

로 수감되었고, 이 중 82.9%는 피학대 경험이 있었다고 보고하였으며, 44.5%는 자신의 범행동기에 대하여 남편의 학대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김영희, 박광배, 이재희, 2004), 여성에 의한 살인의 상당수는 배우자 학대가 동기라는 외국의 실태(Kaser-Boyd, 1993; O'Keefe, 1998)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2005년도 경기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금으로 수행되었다.

이수정은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에 재직하고 있음.

교신저자 : 이수정, (442-76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 94-6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전화 : 031) 249-9198,  
E-mail : suejung@hanmail.net

최근 미국에서는 폭력적인 배우자를 살해한 것으로 기소된 상당수의 여성들에게 중형이 구형되던 과거와 달리, 무죄나 감형의 판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O'keefe, 1997), 이는 전문가 중언의<sup>1)</sup> 효과적 활용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대개의 전문가 중언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특징을 “학대받은 여성 증후군(Battered Women Syndrome, BWS)” 혹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나아가 “정당방어”로 개념화함으로써 이들 여성의 변호에 논리와 근거를 마련해주었는데, 이런 결과는 지난 20여 년간 폭력피해 여성의 심리적 특성 및 행동과 관련된 활발한 연구들을 통해 관련 지식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Maguigan, 1998).

국내에서도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여성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한 사건이 보고된 바 있다(서울 연합뉴스, 2005). 그러나 이는 아주 드문 예로 이명숙(2004)은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남편을 살해한 아내들의 30% 정도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유기징역의 경우는 평균 형량이 9년으로, 이들이 과중한 형량을 받고 있는 것을 볼 때, 사법체계 내에서 지속적인 학대가 주는 고통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을 제기하였다. 이런 문제에 대해 동 연구자는 아내의 남편 살해 사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으로서 전문가 중언제도의 활용, 전담법원의 도입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2004년 서울 여성의 전화 주최로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배우자 살인에 관한 주제의 토론회가 열리는 등 최근 국내에서도 배우자를 살해한 가정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향후 실질적인 제도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성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법학 등 관련 학계와 분야에서의 체계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한 관련지식의 축적이 필요할 것으로 보

1) 전문가 중언제도는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가정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에 대한 일반인(관사와 배심원)들의 이해부족이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고려하여 의료 및 심리학자로 구성되는 전문가의 견해를 중요한 자료로 채택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의료 및 심리학의 학위와 관련 연구실적이 있는 전문가에 한정되었던 기준의 규정에서 나아가 그 범위가 가정폭력 상담경험이 있는 비의료인 상담전문가에까지 확장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Zykorie, 2002).

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에서 남편을 살해한 폭력피해 여성들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전문가 중언의 근거와 논리를 제공해주는 연구결과들을 고찰하고, 국내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배우자를 살해하고 수감 중인 여성들의 심리적 특징과 폭력피해 경험 및 범행 후 사법체계에서의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외국의 전문가 중언에서 사용된 근거와 논리의 국내 적용가능성을 논의하고, 이들 논리를 구체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실증적 자료를 국내에서도 찾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남편의 폭력과 학대를 배우자 살해의 동기로 진술한 청주여자교도소 수감자 34명에 대한 심리검사 결과를 분석하고, 이들 중 2명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배우자 폭력피해 경험과 범행 후 기소, 재판 및 수감과정에서 겪은 경험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 선행연구 고찰

본 장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이면서 배우자를 살해한 여성들의 판결 시 면책근거로 활용되는 외국의 문헌 및 연구결과들을 고찰하였다. 이들은 향후 국내 사법체계에서 동종의 사건에 대해 적용하고자 할 경우 참고해보아야 할 내용으로서, 첫째 배우자 살해여성들이 겪은 폭력피해의 심각성, 둘째 이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심리적 상태의 변화, 셋째 이러한 심리상태의 변화를 통한 배우자 살해 행위의 맥락에 대한 이해, 넷째 효과적인 변호 전략의 선택과정에서 제기되는 이슈의 순으로 제시하였다.

#### 배우자를 살해한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 여성으로서의 범행특성

배우자를 살해한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은 주된 살인동기가 남편의 학대였다. 그들은 치료 프로그램을 찾은 폭력피해 여성들과 비교할 때 더 심하게 구타를 당했고, 도구를 사용한 학대를 더 많이 당했으며, 성관계 강요가 더 많았으며, 더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겪었고, 더 많은 죽음에의 위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Browne, 1987; Dutton, Hohnecker, Halle, & Burghardt, 1994; O'keefe, 1998), 폭력피해 여성의 치명적인 무기 등을 사용하여 배우자를 살해한 것은 보다 심각한 배우자 폭력에 대한 반응임을 시사해준다.

폭력피해로 인해 오히려 기해자가 된 여성들의 보고에

의하면, 이들이 경험하는 신체적 학대로는 뺨을 맞거나, 주먹으로 맞거나, 발로 차이거나, 목을 졸리거나, 칼이나 총으로 위협 당하거나 실제로 상해를 당하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일단 시작된 학대는 대개 만성이 되며, 언어적 학대와, 원치 않는 성관계 요구 등 성적 학대를 동반하거나, 자신이나 자녀, 가족, 친구들을 죽이거나 공격하겠다는 위협, 방이나 집에 강제로 가두거나 외출을 금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Browne, 1987; Dutton & Goodman, 1994; Dutton et al, 1994; O'keefe, 1997), 이러한 학대의 결과로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가는 경우도 20-35% 정도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O'keefe, 1997).

이 같은 보고는 가정폭력 피해가 있는 가해 여성들이 겪은 학대경험이 외상성 사건에 포함되어야 힘을 깨닫게 해준다. 폭력의 심각성에 관한 연구와 관련하여 1990년대 이후 전문가들은 가정폭력의 피해 여성이 나타내는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들에 대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이하 PTSD)를 가장 적절한 진단명으로 여기고 있는데, PTSD는 극심한 외상성 스트레스 사건<sup>2)</sup>에 노출된 후 뒤따라서 특징적 증상이 나타나는 장애로서, 이는 가정폭력의 경험이 재해의 경험이나 목격 등 외상성 경험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심각한 수준의 반복되는 폭력피해 결과, 상황이 나아지거나 이를 피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지 못하여(Browne, 1987), 대개는 분노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살해했으며(Walker, 1989),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sup>3)</sup> 함으로써(Hamilton &

2) DSM-IV(APA, 1994)에서는 이러한 외상성 사건들로 실제적 이거나 위험적인 죽음이나 심각한 상해, 또는 개인의 신체적 안녕을 위협하는 사건에 대한 개인의 직접적인 경험, 타인의 죽음, 상해, 신체 건강을 위협하는 사건의 목격, 가족이나 친지의 예기치 못한 무자비한 죽음이나 심각한 상해 및 이들이 경험한 죽음이나 상해에의 위협을 알게 된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 외상성 사건으로는 직접 경험한 전투, 폭행(추행, 신체공격, 강도, 노상강도), 유괴, 인질, 테러리스트의 공격, 전쟁포로나 수용소 수감, 자연적 혹은 인위적 재해, 심한 자동차 사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진단을 들고 있으며 특히 이 장애는 사람에 의한 스트레스(예: 강간, 고문)가 가해졌을 때 심하고 오래 간다고 보고하고 있다.

3) 배우자 폭력에 대한 방응으로, 배우자를 살해한 여성과 치료 프로그램을 찾은 여성들을 비교했을 때 배우자를 살해한 여성들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전혀 개입이 이루어지지

Sutterfield, 1997) 이들의 배우자 살인은 보다 절망적이고 위협적인 공포상황 하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배우자를 살해한 대부분의 폭력피해 여성은 다른 범죄로 수형생활을 하는 여성과 비교할 때 전과가 더 없었고, 폭력성이 더 적었다는 연구결과는(김영희 등, 2004; O'keefe, 1997), 이들이 배우자를 살해하게 된 배경으로서 개인의 성격적 특성보다는 장기간 견디기 힘들었던 폭력피해 경험에 의한 심리상태의 변화가 보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 배우자 살해 폭력피해 여성의 심리상태

배우자 살해 폭력피해 여성의 심리상태에 대한 연구는, 자칫 가정폭력 상황이나 이에 대한 불충분한 사회적 대응과 인식 등 사회 환경적 맥락보다는 개인적 특성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조심스럽게 이해되어야 하며, 특히 이러한 심리상태의 변화가 폭력피해 경험과 관련되어있으며, 이를 초래한 상황이 이들의 생활 내에서 외상(trauma)에 해당될 정도의 스트레스 상황이라는 점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다음은 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어떻게 외상경험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

오랫동안 지속된 배우자 학대는 피해여성들의 정서, 의식, 지각차원에서 많은 변화를 초래하는데, Walker(1984)는 이러한 일련의 특성을 ‘학대받은 여성증후군(Battered Women Syndrome : BWS)’으로 칭하여 이들의 절망감과 의존적 성향을 개념화한 바 있다. 이후에도, 학대받은 여성들에게서 나타나는 심리적 변화는 가정폭력 관련 문헌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어 왔는데, 이들을 요약하면 터널비전이나 인지왜곡으로 대표되는 인지변화와 임상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다양한 정신건강문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 최근에는 주로 PTSD라는 장애진단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배우자 폭력피해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인지변화로는, 안전에 대한 지각의 변화(Janoff-Bulman, 1992), 장래에 일어날 폭력에 대한 기대의 변화(Dutton, 1994), 자신에 대한 관점의 변화(Peterson & Seligman, 1983), 폭력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지각의 변화(Foa, Zinbarg,

않았고, 치료 프로그램을 찾은 여성들은 경찰의 개입이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Hamilton & Sutterfield, 1997),

& Rothbaum, 1992), 대안에 대한 지각의 변화 및 학대에 대한 내성의 변화(Blackman, 1989), 타인에 대한 신뢰와 힘에 대한 믿음의 변화(McCann & Pearlman, 1990)가 보고되고 있으며(이상 Dutton & Goodman에서 재인용, 1994), 현실에 대한 왜곡된 지각과 이로 인한 대인간 불신(Rosewater, 1983), 상황에 대한 극단적 단순화, 다른 관심 사는 감소되고 생존의 이슈에만 관심을 갖는 전쟁 포로와 유사한 인지적 수축(constriction) 혹은 자극에서 중요한 단서를 놓치고 현실을 특이하게(위험하다고) 해석하는 인지적 초점의 축소현상(narrowed cognitive focus) (Browne, 1987; Hiberman & Munson, 1978; Kaser-Boyd, 1993), 죽음이 임박했다는 만성적인 걱정(Hiberman & munson, 1978), 현격하게 감소된 문제해결능력과 수동성을 초래하는 학습된 무기력 증상(Browne, 1987; Walker, 1979, 1984), 현실검증(Hilberman & Munson, 1978)<sup>4)</sup>에서의 문제가 보고되고 있다(이상, Kaser-Boyd, 1993에서 재인용). Kaser-Boyd(1993)는 폭력피해여성들이 공정하고 정의롭고 예측할 수 있는 세계와는 거리가 먼 현실세계에서 생활해왔기 때문에, 이들의 인지상태에서 보이는 비정상적 경향을 병리적인 현상으로 보기보다는 자신의 현실경험에 근거한 정확한 평가 혹은 일반화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배우자 폭력 피해여성들에게서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져 왔는데, PTSD, 우울, 일반화된 불안장애, 공포증, 해리장애, 신체화 장애, 수면장애, 자살, 알콜 및 약물남용이나 의존의 위험 등이 주로 보고되는 문제들이다 (Cascardi, O'Leary, & Schlee, 1999; Golding,, 1999; Mertin & Mohr, 2000, Ramos, Carlson, & McNutt,, 2004). 연구대상 표집의 구성(예를 들어, 지역사회기관, 쉼터, 클리닉 등), 평가방법(예를 들어, 자기보고 VS 임상가의 면접) 등에 따라서 발생빈도와 양상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피해자가 보이는 증상의 상당수는 임상적 개입을 필요로 하는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고, 폭력이나 학대의 강도 및 기간(예; 생명의 위협, 신체적 상해, 소름끼치는 공포)이 정신건강문제의 발병 위험성 혹은 증상의 심각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4) 사고장애 환자와 유사하나 논리적 사고에 문제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Cascardi, et al, 1999; Golding, 1999; Terrance, 2000).

1990년대 이후 전문가들은 가정폭력의 피해 여성이 나타내는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 중에서도 PTSD를 가장 적절한 진단분류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Walker (1979, 1984)에 의해 처음 표현된 ‘매맞는 여성 증후군’도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이하 PTSD)의 하위유형 안에 포함되었는데 (Walker, 1993), 이와 함께 다른 많은 연구들도 폭력의 피해 여성 가운데 상당수에게서 나타는 심리적 반응이 PTSD의 진단기준을<sup>5)</sup> 충족시키고 있다고 보고했다 (Browne, 1987;995; Houskamp & Foy, 1991; Kemp, Rawlings, & Green, 1991; Mertin & Mohr, 2000; Walker, 1984). 따라서 오랫동안 배우자의 폭력에 시달리다가 바로 그 학대가 범행동기가 되었던 여성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도 결국에는 학대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일 것으로 추정된다.

#### 폭력피해 여성의 심리상태 변화를 통한 배우자 살해 행동의 맥락적 이해

배우자를 살해한 여성들이 남편을 죽이기에 앞서 왜 폭력남편 혹은 폭력상황을 떠나지 않았는지, 경찰을 부르지 않았는지, 왜 다른 친지나 친구에게 알려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지, 왜 실제 폭력이 가해지지도 않은(예를 들면, 남편이 잠든 동안) 상황에서 필요 이상의 치명적인 공격을 시도했는가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 사례에서 일어난 학대의 특징, 경제적 상황, 이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나타났던 결과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나, 반복된 폭력 피해경험 이후 나타난 심리상태 변화의 맥락 즉, 인지변화나 PTSD 증상을 통한

5) DSM-IV 에서는 외상성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① 사건에 대한 지속적 재경험(반복적이고 집요한 강제적 회상, 사건에 대한 반복적이고 괴로운 꿈, 그 상황을 재경험하는 듯한 지각, 차각, 환각, 해리상태의 경험, 유사한 사건이나 상징적 단서에 노출되었을 때 심각한 고통과 생리적 재반응), ② 사건 관련 자극에 대한 지속적 회피(사건에 대한 대화, 느낌, 생각의 회피,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사람, 상황, 활동의 회피, 사건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기억상실)와 반응의 마비(중요한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감소, 정서범위의 제한, 미래가 단축된 느낌), ③ 각성상태의 증가(잠들기 어려움, 자극에 과민한 상태이거나 분노의 폭발, 집중의 어려움, 지나친 경계, 악화된 놀람반응)를 제시하고 있다(APA, 1994).

설명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Dutton & Goodman, 1994).

배우자를 살해한 여성들의 행동에 대한 사회일반의 태도(사법체계 포함)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왜 배우자를 살해하기 전에 폭력상황을 떠나거나 경찰, 친지, 친구에게 알려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이다. 그러나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학대로 인한 ‘학습된 무기력’이나 PTSD의 ‘회피’ 증상의 일부인 부정(denial), 심리적 무감각(numbing), 학대의 결과에 대한 최소화(minimization of the effects of abuse)가 나타날 경우 이 여성은 학대를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러한 증상은 Walker(1979, 1984)의 ‘매 맞는 여성증후군(BWS)’으로도 설명이 가능한데, 반복된 신체적 폭력을 통해서 피해 여성들은 이러한 학대를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어 앞으로의 학대를 피하거나 예방하려는 동기가 저하된다는 것이다.

적지 않은 사례에서 배우자 살해여성은 실제 폭력을 당하고 있지 않거나 임박한 위협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남편을 살해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 역시 이들의 인지변화와 PTSD 증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PTSD 증상의 하나인 폭력피해 사건에 대한 ‘지속적 재경험’ 현상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필요하게 자기방어를 하는 행동을 설명해준다(Maguigan, 1998). 즉, 이러한 증상 때문에 남편이 참자고 있는 중에도 자신의 마음속에서 학대가 재경험되고 또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두려움을 갖게 되어 이에 대한 반응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급박하게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특히, 폭력피해 여성들이 남편에 대해 갖는 극심한 공포는 생명에 대한 위협지각을 과장되게 지각하도록 하여 독특한 인지반응(예, 위험예견, 위험하다는 압도적인 생각)을 야기하게 된다(Browne, 1987; Campbell, 1986, 1995; Dutton, 1992; Herman, 1992; Hilberman, 1980) 이는 과장된 반응, 자극에 과민한 반응, 생리적 각성, 악화된 놀람반응 등의 ‘증가된 각성반응’을 동반한다. 예를 들어, 위협의 ‘급박성’에 대한 일종의 반응으로 베트남 참전 뵌역군인이 자신의 집 마당에서 머리위로 지나가는 비행기 소리를 듣고 마치 전투장면에서와 마찬가지로 다급하게 몸을 감추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지각

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오히려 합리적인 판단인 것이다. 즉, 폭력의 정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해가는 상황에서 이 여성들이 느끼는 지속적인 두려움과 공포, 과대각성(hyper-arousal)은 폭력과 학대 경험에 근거한 합당한 반응이며, 배우자 살인의 행위는 이런 인지적 왜곡이 극도에 이른 상황에서 선택하게 되는 합당한 반응의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죽은 남편을 향해 수차례 칼로 찌르거나 총을 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minimal level of force) 명확히 계산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나타내는데 이 역시 극심한 공포에서 초래된 ‘통제력의 상실’로 인해 야기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또한 이 여성들이 갖는 위협에 대한 지각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게 해주는 행동이기도 한데, 이전에 한 번도 남편의 폭력을 중단시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폭력을 중단시켰다는 것을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게 된 상태를 반영한다는 것이다(Maguigan, 1998).

#### 배우자 살해 폭력피해 여성을 위한 전문가 증언의 주요 변호전략에 대한 논의

폭력피해 여성의 배우자 살해행동에 대한 맥락에 대한 이해는 법정에서의 변호전략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는데, 이를 통해 의료 전문가의 진단에 의한 심신미약이나 정신장애 주장을 해서 그 결과로 감형이나 형의 면제를 겨냥하기도 하고, 배우자 살해를 남편의 폭력에 대한 일종의 정당방위로 개념화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심리적 변화를 정신장애로 주장해야 하는지 혹은 정당방위 요건으로 주장해야 하는지 대해서는, 구체적 사례의 상황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이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는 전문분야의 입장(예를 들어, 정신의학, 법학, 여성학 등)에 따라서도 다른 것으로 보인다. 어떻든 보다 중요한 것은 변호전략의 방향이 재판과정에서 판결이나 형량에 차이를 가져올 뿐 아니라 향후 아동양육권 유지와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도 각기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각 입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 정신장애 주장

배우자 살해를 이상심리 상태에서 일어난 행동으로 설

명하는 입장에서는 정신이상, 심신미약 등을 변호의 전략으로 사용하는데, 이 때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에게서 나타나는 정신건강 문제가 폭력의 피해자로서의 경험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 정신이상으로 진단될 수 있음을 제시하는 연구결과가 중요한 근거가 된다. 특히, 최근에는 PTSD가 피고를 위한 변론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는 베트남 참전 퇴역 군인들의 사례에서 비롯되었다. 즉, 퇴역군인들의 일부가 살인사건이나 살인기도 혹은 불법약물 남용과 같은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을 때 이들의 범죄행동을 전쟁경험에서 초래된 일시적 정신이상(insanity)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여 무죄선고를 받거나 감형 혹은 가석방이나 집행유예를 받도록 한 것인데, 이런 판례는 1980년대 까지 이어져 250 여건의 사례에서 사면, 감형, 혹은 감옥에 가는 대신 치료를 받으라는 판결이 주어졌다. 범죄 순간 이들은 해리상태 즉, 베트남에 다시 돌아가 그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 공격행동을 행동을 했다는 것으로, 전쟁경험과 범죄행위 간 연관성을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판결을 가능케 했던 것이다(Slovenko, 2004). 이후 다양한 외상성 스트레스의 희생자에게 적용된 PTSD가 가정폭력의 가해자를 살해한 여성들을 위한 변론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는 이 여성들이 겪은 폭력 피해 경험과 이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 증상이 PTSD를 겪고 있는 베트남 참전 퇴역군인들의 경험 및 증상과 유사하다는 판단에 근거하며, 실제로 상당 수의 연구결과에서 학대받은 여성의 PTSD 진단을 총족시키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PTSD 진단과 BWS 같은 중후군을 전문의 종언의 주 내용으로 제시하면서 살인행동을 정신장애의 결과로 개념화 하는 경우, 폭력피해 여성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심각한 폭력피해 상황에 대한 반응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특히 이들을 전쟁이나 화재 등 비극적이고 비정상적인 사건의 무고한 생존자들과 같은 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줌으로써 배심원들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관대한 판결을 가져오게 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Schuller, Smith, & Olson, 1994). 그러나 최근에는 이 접근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들의 살인행동이 ‘증상’ ‘장애’로 개념화됨으로써 상황에 대한 합리적 반응이 아니라 심리적 병리의 발달을 반

영하는 것으로 제시되면, 결과적으로는 들키다 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다. 정신장애 적용을 비판하는 입장에 의하면 전문가의 종언이 이들의 지능력의 감소, 정신이상, 전반적인 불안정성이 모아지고 있어 폭력피해 여성의 병리적 이미지를 증가시켜 낙인과 편견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들의 자녀 양육권 허용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뿐 아니라, ‘외상적 경험은 합리적 능력을 저해한다’는 공식을 갖게 함으로써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사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Dutton & Goodman, 1994; Maguigan, 1998; Schneider, 2000; Schuller & Rzepa, 2002; Terrance, 2003).

국내에서 이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형법에서 PTSD 진단을 책임배제 사유로 인정할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환각상태를 경험하는 심각한 수준의 정신증을 동반하는 정신장애 이외에는 범행당시 합리적 판단이 불가했었다는 인정을 내리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형사책임의 판단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있다 해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감형에 그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 정당방위 주장

미국에서는 1970년대 후반까지 정신이상이 변호전략으로 사용되었으나 그 이후로는 주어진 상황에서 살인이 필요했으므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주장과 사례가 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Maguigan, 1998). 이는, 기존의 정신 장애 주장이 폭력피해 여성의 다양한 경험을 간과하고 중후군 식의 개념으로 동질화, 단일화함으로써 이 여성들의 합리성과 능력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비판하면서, 이 여성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특징의 다양성을 정당방위 개념의 틀 속으로 통합하려는 움직임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Maguigan, 1998; Terrance, 2003). 한 예로, 최근에는 BWS라는 용어의 사용보다는 “가정폭력과 그 영향(battering and its effects)”이라는 보다 일반적 용어의 사용이 제안되기도 했다(Maguigan, 1998).

하지만 전통적인 가치관에 근거한 국내 형법체계에서 정당방위의 요건을 배우자 살해여성의 특수한 상황에<sup>6)</sup>

6) 이러한 정당방위기준이 체격이나 힘이 비슷한 서로를 모르는 두 남자 사이에 일어난 일회성 사건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으로서(Gillespie, 1989), 폭력피해여성의 경우, 오랜 기간 누적

적용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미국의 경우 정당방위의 요건은 각 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에 대한 필요요건으로서 먼저, 방위 행위자의 행위는 상대의 공격이나 위협으로 인해 자신이 급박한 죽음이나 심각한 신체적 위협상황에 있었다는 실제의 믿음이나 지각에 의해 동기화되어야 한다. 즉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죽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실제로 믿어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이러한 방위 행위자의 믿음과 행동이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이는 합리적인 사람이 같은 상황에서 피고와 같은 방식으로 지각하고 행동할 것이라 전제하는 것으로, 방어적 행동의 합리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Schuller, 1997).

정당방위 성립요건을 배우자 살해여성에 적용시켜 볼 때, 폭력피해 경험이 이 여성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주었음을 살인행위의 배경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들이 학대장면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길로 배우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할 수 있어, 상기한 요건 중 첫 번째 요건은 어렵지 않게 충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lovenko, 2004). 즉 자기 보호를 위해 상대를 죽이는 것이 필요했다고 실제로 믿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완전한 정당방위<sup>7)</sup>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요건인 합리성 요건도 충족시켜야 하는데, 많은 경우 판사나 배심원들이 피고의 상황을 인정하고 동정한다 해도 피고의 믿음이 합리적이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간주하여 무죄를 판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되고 있다. 사실 가정폭력피해 상황에 대한 일반의 오해와 편견 때문에 이 두 번째 요건이 충족되기는 더 어려운데, 판사나 배심원, 법학자들이 볼 때 자신의 남편을 살해할 때 합리적으로 행동했으리라고 믿기 어려우며, 특히 폭력이 행사되지 않는 비대면 살인의 경우(예를 들어 수면 중의 살인) 누가 봐도 명백하게 “급박한” 위협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여성들이 가졌

된 반복된 폭력상황에 있었다는 점, 외부에서 피난처나 원조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 있었다는 점, 가해자와 앞으로도 계속 같이 살아야 하므로 앞으로도 이러한 폭력이 계속 일어 날 것이라는 예견과 두려움 속에 있었으며, 남편이 폭력을 사용하고 있는 증보다는 잠자거나 무방비상태일 때 살해를 했다는 점 등이 전통적인 정당방위 경우와는 다른 상황이다(Browne, 1987), 이와 관련하여 비교법적으로 접근한 법리적 논의는 이명숙(2005)의 논문을 참조할 것.

7) 범죄 요건을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무혐의나 무죄 적용이 가능하다.

던 위협감은 주관적인 믿음에 불과하며, 남편의 폭력정도에 비해 칼이나 총과 같이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한 것은 불필요했으므로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한 무엇보다 그려려면 폭력관계를 떠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Schuller, 1997).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두 번째 요건에 대한 정당방위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Terrance, 2003)나 이를 성공적으로 적용한 사례(People v. Humphrey, 1996년 캘리포니아 사례)에 의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육체적 크기나 힘에서 열세에 있기에 구타와 학대를 당하는 시점에서 반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장기간 심각한 폭력의 결과로 나타난 심리적 상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인 것이라 판단되는 행동을 수행하기 어렵게 하며, 또한 자신의 상황에 대한 과대지각, 죽음이 임박한 위협상황이라는 지각, 그리고 이로 인한 극심한 공포는 이 여성들의 폭력피해 역사를 고려해볼 때 상황에 합당한 판단과 반응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합리성의 기준으로서 주관성의 요소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서, 판결 시 판사나 배심원이 배우자를 살해한 여성의 폭력피해 경험의 결과로 갖게 된 주관적 인상과 판단을 인정하여, 사고 당시 이 여성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구성하였는지를 고려하고, 이 여성의 입장에서 사건의 상황을 바라보도록 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미국에서도 정당방위의 두 번째 요건에서 주관성을 체택하고 있는 곳은 소수이지만 이를 포함하는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Maguigan, 1991, Terrance, Matheson, & Spanos, 2000).

정당방위 주장에서는 배우자 살해여성의 경험에 근거한 주관적 인상이나 판단의 합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고가 일어난 맥락<sup>8)</sup> 즉 폭력의 빈도와 결과, 앞으로의 폭력을 예상할 수 있게 만든 위협정도, 여성이 가정을 떠나려 했을 때 가해했던 위협, 지역사회 자원의 부재, 원조 요청에 대한 주위와 경찰의 부적절한 개입 등 살인행위가 일어나게 된 정황도 심리상태의 변화와 함께 고려되어 죽

8) 폭력피해 여성과 배우자를 살해한 폭력피해 여성과의 주요 차이는, 죽이겠다는 위협, 폭력가해자의 알콜남용 및 총기소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Foster, Veale, & Roget, 1989), 폭력피해여성은 폭력을 종식하려는 시도에서 마지막 방법으로 배우자를 죽인 것으로 나타났다(Walker, 1984, 이상 Hamilton & Sutterfield, 1997에서 재인용).

음에 대한 두려움(Browne, 1987; Campbell, 1986, 1995; Dutton, 1992; Herman, 1992; Hilberman, 1980)이 합당한 반응이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Terrance et al, 2000). 따라서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살인행위가 일어나게 된 맥락에 대한 철저한 개별화된 조사과정을 필요로 한다.

정당방위 주장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민으로서의 지위도 상실하지 않으면서 무혐의 혹은 무죄 판결을 유도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한층 진보적이긴 하나, 정신장애 주장에서와 같이 전문가 증언을 통한 분명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정당방위 요건<sup>9)</sup>의 총족에 대한 판사 혹은 배심원의 개인적 판단에 의지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국내에 적용할 경우, 재판은 물론 수사단계에서부터 해당 사례의 가정폭력 피해 역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수집되어야 하고, 판결과정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해 초래되는 개인의 심리상태의 변화에 대한 지식이 공유되어야 하며, 정당방위에 대하여 다른 형사범죄와 구분하여 융통성 있게 적용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 같은 자료에 근거하여 남편을 살해한 폭력피해 여성들에게 주관성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때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외국에서 일반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는 살해 당시의 피학대 여성들의 심리적 위기감을 우리나라 사례들에서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부분이다. 즉 외국의 재판정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는 피학대 여성들의,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죽음에 대한 임박함과 그로 인한 극심한 공포감(Browne, 1987; Campbell, 1986, 1995; Dutton, 1992; Herman, 1992; Hilberman, 1980)이 우리나라의 비슷한 사례들에서도 발견이 되는지를 밝히는 일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단 실증적인 연구물들을 통하여 관련 학

9) 우리나라의 형법상 정당방위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기본적으로 미국의 형법조항과 크게 다르지 않다.

#### 제21조 【정당방위】

-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③ 전황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와 사회 전반에서 이 문제가 공론화되면 결국에 가서는 재판정에서도 피학대 여성들의 살해동기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 즉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하여' 남편을 살해하였기에 벌하지 아니한다는 형법 21조 3항의 적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편을 살해한 피학대 여성들의 범행 당시의 심리상태를 계량화된 방법과 심층면접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하지만 응답자들 중 많은 여성들은 이미 사건이 종료된 지 상당한 세월이 흐른 뒤에 본 설문에 응해야 하는 것이었기에 그 당시의 절박했던 심경에서는 많이 벗어나 있는 상태인 점은 감안하고 결과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회상기법을 동원하기는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건이 모두 종결된 뒤이기에 범행 당시보다는 모든 심리적 기능이 많이 회복된 뒤라는 점을 꼭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결과에 대해 예상할 수 있는 점은 국내의 남편살해 여성들에게 있어서도 남편의 폭력에 기인하여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수준은 외국에서 밝혀진 별별기준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 여성 응답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세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심리특성 상에서 부적응적 징후를 보일 것이라는 점이었다.

## 연구방법

### 연구대상

2004년 1월 법무부 보고서 기준에 따르면, 청주여자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여자 재소자는 총 461명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남편살해로 수감되어 있는 여성 재소자는 총 133명(30.5%)에 달하고 있었는데, 전체 461명의 재소자 중에서 살인범만을 놓고 볼 때, 남편을 살해한 여성들의 비율은 5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들 중에서도 특히 피학대로 인해 남편을 살해하게 된 여성재소자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살해의 주된 동기가 피학대라고 응답했던 59명의 여성 중 설문에 응답하기를 동의하였던 총 34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들은 모두 초범자들이었다.

### 측정도구

#### Honolulu Scale

남편살해 여성들이 남편으로부터 심리적 혹은 신체적

학대에 얼마나 오랜 기간 노출되어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혼인기간을 살펴보았다. 혼인기간은 남편살해 여성의 본 남편과 결혼할 당시 나이에서 사건이 발생됐던 시점의 나이를 총 개월 수를 년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 학대강도

부부간의 학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traus(1979)의 CTS(Conflict Tactics Scales), Hudson과 McIntosh(1981)가 제작한 ISA(Index of Spouse Abuse)를 변안·수정하여 그 중에서 심리적 학대 7문항과 신체적 학대 7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한 정서영과 김명자(1995)의 '부부간 심리적 신체적 학대척도'를 사용하였다. 본고에서 남편살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뢰도( $\alpha = .92$ ,  $\alpha = .93$ )를 보였다. 각 문항은 남편과 생활하던 당시 남편살해 여성들이 질문지의 내용을 얼마나 경험했는지 알기 위하여 4점 Likert형 척도를 적용하였다. 이때 응답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반응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표 2에는 각 유목의 학대에 대한 경험의 유무가 빈도로 정리되어 있다.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항목은 피학대 경험 '무'로 처리하였으며 나머지는 '유'로 처리하였다.

### 위험성 사정 척도(DAS)

피학대 여성들은 자살생각과 함께 자신의 생명이 끊시 '위험하다는 급박한 생각(overwhelming sense of danger)'에 몰두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고 선행연구들은 제시하고 있다(Browne, 1987; Dutton, 1992; Herman, 1992; Hilberman, 1980). 이들을 이렇게 주관적으로 위험하다고 느끼게 하는 직접적인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데, 366 명의 피학대여성들과 그렇지 않은 2,622명의 여성들을 비교함으로써 개발된 위험성 사정 척도(Danger Assessment Scale : 이하 DAS)는 장기화된 배우자와의 폭력상황에서 피학대여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남편의 학대에 기인한 위험요인을 측정해준다(Campbell, 1981, 1986, 1995; Stuart & Campbell, 1989). 최근 남편의 폭력에 기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가해자가 사망한 사건들에서 DAS는 이 같은 학대에 의한 살인사건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

견하여준다고 한다(Campbell, 1995). Campbell과 Webster 등(2004)은 남편의 학대로 인해 여성이 살해된 사건과 살해되지 않은 사건을 비교하였는데, DAS의 변별기준을 7 점으로 하였을 때, 예측의 민감도(sensitivity)는 58%, 예측의 명확성(specificity)은 87%였으며, ROC 분석 결과, AUC<sup>10)</sup>는 90.8%에 이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위험요인의 수준과 학대에 기인한 우발적인 살인 간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본 연구에서 따라서 국내에서 최초로 국내 남편의 학대에 기인한 남편살해 여성들의 DAS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DAS의 각 위험성 문항들은 '예' 혹은 '아니오'로 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고에서는 위험성 인자로 20문항이 수록된 DAS를 채택하여 검사하였고, 위험성 정도는 각 문항에서 '예'로 답한 문항들의 합을 총점으로 계산하였다. DAS에 대한 신뢰도 분석에서 20개로 이루어진 측정항목의 신뢰도( $\alpha$ )는 내적 일관성이 .60에서 .86까였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9에서 .94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ampbell, 1981, 1986, 1995; Stuart & Campbell, 1989).

### 성격평가 질문지(PAI)

성격평가 질문지(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AI; Morey, 1991)는 성격과 정신병리를 평가하기 위한 종합심리검사로 임상장면에서 환자나 내담자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검사이다. PAI는 4지 선다형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중간이다, 매우 그렇다"으로 된 344문항, 전체 22개의 척도로 구성된 검사이며, 중복문항이 없다. 본 고에서는 전체 22개의 척도 중 신체적 호소, 우울증, 공격성, 자살관념, 불안과 관련된 5개의 척도(하위척도 13개, 총 106문항)를 선별하여 검사하였다. 한국판 PAI는 척도와 하위척도를 성인

10) ROC분석에 있어서 AUC(Area Under Curve)는 예측력을 알려주는 지표이다. 일일 준거행동 지표의 예측에 있어 100%의 TP(True Positive)와 0%의 FP(False Positive)를 기록하면 면적은 1 혹은 100% 된다(e.g., high sensitivity). 하지만 예측이 전혀 정확하지 않다면 AUC는 50%, 즉 .5가 된다. 일반적으로 예측도구들은 FP에 비하여 TP가 상대적으로 더 크기를 기대한다. Cohen(1992)에 따르자면 .70 이상의 AUC는 효과크기(d) .80 혹은 상관계수 .50에 대응되며, AUC .65는 d .50, 상관계수 .10에 해당되며, AUC .50은 d 0, 상관계수 0에 대응된다고 보고하였다.

표본(N=2,212), 대학생 표본(N=1,472), 고등학생표본(N=1,150) 및 임상표본(N=836)과 비교해서 해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T점수로 환산하였다. PAI에서 T점수는 표준화 표본의 원점수 평균을 50, 표준편차를 10으로 환산한 값이다. 임상집단이 아닌 일반표본의 경우 대부분의 척도에서 수검자의 약 98%가 70이하이다. 그러므로 어떤 척도에서 T점수가 70이상이면 성인의 전형적인 반응과는 상당히 일탈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판 PAI의 신뢰도는 약 .76, .77, .73 정도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김영환 등, 2001).

###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척도(IES)

외상 후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Impact of Event Scale(IES; Horowitz, Wilner, & Alvarez, 1979)을 사용하였다. IES는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재화와 회피, 두 개의 하위요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표본에 적용해 본 결과 .79에서 .92 정도의 내적 합치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Horowitz et al 1979). 교통사고 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진단의 기준점으로는 30점(Bryant & Harvey, 1996)이, 정신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35점이 기준점으로 적합하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했던 번역본은 세브란스 정신과에서 제작한 것이었는데, 환자집단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평균이 39.10점, 표준편차가 10.01점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세브란스병원 정신과, 2004; 이선미, 은현정, 1999).

### 연구절차

본 조사는 전체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남편살해 여성들에게 먼저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고 그 후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남편살해 여성들의 범행관련 심리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회상요법’을 실시하였다. 15분에서 20분 동안 과거 남편과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사건들에 대한 회상과정이 먼저 이루어졌고, 이후 그 내용들을 개방형 설문에 간단한 수기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과거 남편과의 관계에서 발생됐던 기억들에 대한 회상이 끝난 직후 설문지의 각 문항에 답하는 방식으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심층면담에 응했던 남편살해 여성은 총 2명이였으며, 어린 시절 가정환경부터 남편과의 결혼관계,

범죄관련 내용들, 범죄발생 후 형 집행 과정에 이르기까지 자유롭게 구술하도록 유도되었다. 모든 상담내용은 녹음 후 채록하였다.

## 연구결과

### 심리검사 결과

#### 남편살해 여성의 특성

전체 34명의 남편살해 여성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대는 30대 8명(23.4%), 40대 19명(55.6%), 50대 7명(20.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무학 1명(2.9%), 초등졸 7명(20.6%), 중졸 9명(26.5%), 고졸 11명(32.4%), 대졸 5명(14.7%)의 분포를 보였다. 결혼 전 직업상태에서 직업이 있는 경우가 27명(79.4%)으로 직업이 없는 경우 7명(20.6%)에 비해 대다수의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수감 전 결혼상태는 사실혼 7명(20.6%), 초혼 23명(67.6%), 재혼 4명(11.8%), 이혼 0명(0%)으로 초혼율이 가장 높고 이혼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살해 여성들의 결혼할 당시 나이는 10대 3명(8.8%), 20대 25명(73.6%), 30대 5명(14.6%), 40대 1명(2.9%)으로 나타났으며, 결혼 할 당시 평균 나이는 25.41세였다. 남편과의 결혼 전 교제기간은 6개월 이하가 13명(38.2%), 6개월에서 1년 사이가 11명(32.4%), 1년에서 3년이 7명(20.6%), 3년 이상이 2명(5.9%)으로 나타나 70.6%의 응답자들이 남편을 만난 지 1년 이내에 결혼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 여성들의 결혼동기로는 사랑해서 13명(38.2%), 의지할 사람이 필요해서 6명(17.6%), 경제문제로 2명(5.9%), 임신해서 4명(11.8%), 남자가 불쌍해서 1명(2.9%), 남자가 위협해서 1명(2.9%), 결혼 전 성관계를 가져서 1명(2.9%),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2명(5.9%), 부모님의 강요로 3명(8.8%), 기타 1명(2.9%)으로 나타났다.

현재 수용된 본 건을 살펴보면, 살인이 27명(79.4%)으로 대부분의 여성들이 남편살인죄로 형을 언도받은 상태였으며 살인공모 혹은 치사가 3명(8.8%), 상해치사 1명(2.9%), 방화치사 2명(5.9%)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살인과 살인공모 혹은 치사의 경우 무기징역형이 12명(35.3%)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표 1참조). 남편살해와 관련하여 사전 모의 혹은 계획과 관련된 질문에서 질문에 응했던 31명(91.2%)이 범행에 앞서 사전계획이 없었다고

표 1. 죄명에 따른 수형기간

죄 명	수형기간(단위 : 개월)				
	평균	빈도(%)	표준편차	최소	최장
살인	44.15	27(79.4)	43.11	4	무기징역
살인공모 혹은 치사	71.00	3( 8.8)	48.50	15	무기징역
상해치사	5.00	1( 2.9)	.	5	5
방화치사	7.50	2( 5.9)	3.54	5	10
기 타	20.00	1( 2.9)	.	20	20

\* 괄호안의 내용은 %임.

응답했다. 본범을 제외한 남편살해 여성의 범죄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본범을 제외한 지금까지 전과 수, 범죄 전력 중 폭력, 성범죄, 강도, 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리고 이와 관련된 유죄판결전력과 관련된 질문에서 질문에 응했던 31명(91.2%)의 남편살해 여성의 본 범을 제외하고 전과나 유죄판결전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에 포함된 표본의 구성원들은 무응답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초범자임을 알 수 있었다.

### 남편학대특성

#### 결혼기간

결혼기간은 결혼시점부터 남편살해가 발생된 시점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결혼 후 이들이 남편으로부터의 학대에 얼마나 오래 노출되어 있었는지를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하다. 결과를 살펴보면, 결혼 후 6개

월 만에 남편을 살해했던 경우가 1명(2.9%),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가 4명(11.7%), 5년 이상 10년 미만이 5명(14.7%),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12명(35.3%), 15년 이상 20년 미만이 4명(11.7%), 20년 이상이 4명(11.7%)으로 나타나, 대체로 결혼 후 10년에서 15년의 장기간 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남편학대강도

청주여자교도소에 남편살해로 수감되어 있는 여성들에게 결혼기간 동안 남편으로부터 받았던 학대경험에 관해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남편살해 여성들은 남편으로부터 심각한 신체적·심리적 학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표 2), 남편은 일반적으로 아내를 무시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의견이 불일치 될 때 모욕적인 말과 욕설을 하여 아내의 감정을 상하게 했고, 종종 하인 부리듯 했으며, 남들 앞에서 아내를 모욕하거나 창피를 주었고, 아내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남편과 다툼이 있는 경우 아내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밀거나 움켜잡고 훈드는 등의 행동을 했으며, 손바닥으로 아내의 얼굴이나 머리 등을 때렸으며, 심한 경우 아내를 발로 차거나 물건이나 주먹으로 구타했고, 단단한 물건(칼, 혁대, 봉등이 등)으로 때리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2. 응답자들에 대한 남편의 학대강도 빈도분석

남편의 신체·심리학대에 대한 문항	무	유
1. 남편은 나를 무시했다.	13(38.2)	21(61.8)
2. 의견이 불일치 될 때 모욕적인 말과 욕설을 하여 나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	8(23.5)	26(76.5)
3. 남편은 나를 허인 부리듯 했다.	11(32.4)	23(67.6)
4. 남편은 남들 앞에서 나를 모욕하거나 창피를 줬다.	13(38.2)	21(62.8)
5. 남편은 나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았다.	10(29.4)	24(70.6)
6. 다투시 남편은 내게 물건을 던졌다.	8(23.5)	26(76.5)
7. 다투시 나를 밀거나 움켜잡고 훈드는 등의 행동을 했다.	6(17.6)	28(82.4)
8. 다투시 손바닥으로 나의 얼굴이나 머리 등을 때렸다.	10(29.4)	24(70.6)
9. 나를 발로 차거나 물건이나 주먹으로 구타했다.	10(29.4)	24(70.6)
10. 나를 단단한 물건(칼, 혁대, 봉등이 등)으로 때렸다.	13(38.2)	21(61.8)
11. 나를 사정없이 녹초가 되게 때렸다.	15(44.1)	19(55.9)
12. 칼 또는 흉기로 나를 위협했다.	13(38.2)	21(62.8)
13. 아이들 앞에서 나를 무시하거나 모욕을 주거나 때렸다.	9(26.5)	17(53.5)
14. 내가 원하지 않을 때에도 부부관계를 종용했다.	9(26.5)	25(73.5)

\* 괄호안의 내용은 %임.

표 3. DAS에서 나타난 위험요인 빈도분석

위험성 척도 문항들	유	무
1. 신체적 학대의 심각성과 빈도의 증가	16(47.1)	14(41.2)
2. 배우자로부터 도망친 경험이나 시도	23(67.6)	11(32.4)
3. 배우자의 직업 상 불안정	19(55.9)	11(32.4)
4. 위협적인 무기 사용	20(58.8)	13(38.2)
5. 죽이겠다는 위협	18(52.9)	14(41.2)
6. 가정폭력 기소 막기 위한 위협	15(44.1)	17(50.0)
7. 타인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식	4(11.8)	28(82.4)
8. 원하지 않은 성행위 강요	23(67.6)	10(29.4)
9. 배우자에 의한 질식경험	15(44.1)	17(50.0)
10. 배우자의 불법적인 약물 복용	3( 8.8)	29(85.3)
11. 배우자의 알콜중독	17(50.0)	15(44.1)
12. 일상생활의 통제	19(55.9)	13(38.2)
13. 감시당하는 기분	20(58.8)	12(35.3)
14. 임신 중 경험했던 심한 신체적 폭력	10(29.4)	21(61.8)
15. 본인의 자살시도	15(44.1)	17(50.0)
16. 배우자의 자살시도	9(26.5)	22(64.7)
17. 배우자의 자녀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	30(38.2)	17(50.0)
18. 충기사용 유무	-	-
19. 미행, 재산몰수, 위협적 문구사용 등	13(38.2)	19(55.9)
20. 배우자로 인한 죽음의 위협	22(64.7)	11(32.4)

\* 팔호안의 내용은 %임.

#### 위험성 사정척도 DAS에 드러난 위험요인

오랜 기간 행해졌던 남편의 신체적 심리적 학대 결과 남편살해 여성들은 학대로 인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DAS(Campbell, 1981)는 이런 종류의 위험요인을 측정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과거 남편과 생활하던 시절 남편이 위협적인 무기를 사용했던 경우는 20명(58.8%)으로 그렇지 않았던 13명(38.2%)보다 높게 나타났다. 남편과 생활하던 시절 남편으로부터 도망친 경험이나 시도가 있었던 경우는 23명(67.6%)으로 대부분의 남편살해 여성들이 남편과의 학대적 관계를 벗어나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폭력상황에서 남편이 질식시키려 했던 경우는 31명 중 15명(44.1%) 정도 보고되었다. 남편이 알콜중독자였거나 술과 관련된 문제를 지니고 있었던 경우는 17명(50.0%)이었다. 한편 아내가 임신을 했을 때, 남편으로부터 심한 매질을 당했던 경우도 10명(29.4%) 있었고 이 중 임신상태에서 남편에게 매를 맞고 유산된 경우도 4명(11.7%) 있었다. 남편살해 여성들 본인이 자살을 시도했던 경우는 15명(44.1%), 아내 외에, 남편이 아이들에게도 신체적인 학대를 가했던 경우도 17명(50.0%)에 이르러

학대에 기인한 남편살해 여성들의 아이들 역시 아버지로부터의 심각한 학대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남편살해 여성들이 폭력적인 남편과의 심각한 학대관계에서 ‘남편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위협을 느꼈던 경우가 22명(64.7%)으로 그렇지 않은 11명(32.4%)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미 선행연구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피학대여성들이 폭력상황에서 극심한 공포감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구체적인 위험상황에 놓여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는 DAS가 최초로 시행되었기에 비교할 대상을 선정하기가 어려웠으나 이미 타당도를 인정받은 외국 연구들과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에 포함되었던 남편을 살해한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평균 DAS는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외국의 경우 가해자를 살해하거나 피해자를 살해하는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7점을 기준으로 한다는<sup>11)</sup> 점을 고려해볼 때

11) 이 논문에서는 외국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변별 기준점 7점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가정폭력의 경우 문화적 차이가 혈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DAS를 이용하여 가정폭력으로 인명피해가 난 사건들에 대

(Campbell, 1995) 이 연구에 참여하였던 응답자들로부터 얻는 DAS 평균값은 9.1(SD=5.05)이었다. 7점 이상이었던 응답자들의 비율(65.6%)이 반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 해보았을 때 이들에 대한 남편폭력의 수준은 생명에 위협이 되는 수준, 그 이상이었을 것임을 짐작해볼 수 있다. 북미의 경우 가정폭력 사건이 신고 되는 경우 사건 경위에 대한 치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DAS 같은 척도들을 근거로 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원이 개입할 수준을 결정한다는 점은 매우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 남편살해 여성의 심리적 징후

#### PAI에서 나타난 남편살해 여성의 심리적 징후

분석결과 각 문항에 대한 요소들 즉, 신체적 호소, 우울증, 불안, 자살관념과 관련된 하위문항들의 PAI T 점수 평균이 70 이상으로 성인의 전형적인 반응과는 상당히 일탈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 특히, 신체적 호소, 우울증, 자살관념 문항들은 임상집단에서 관찰되는 T점수 80 이상의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이들에 대한 대안

이 필요로 함을 시사하고 있다(구체적 내용은 표 3 참조). 그러나 공격성 척도 (Aggression, AGG)에 대한 하위척도들을 T점수로 환산 한 결과, 공격적 태도척도(Aggressive Attitude; AGG-A)는 평균이 67.50(SD=10.77)이며, 언어적 공격척도(Verbal Aggression; AGG-V)는 평균이 76.07 (SD=10.93)이고, 신체적 공격척도(Physical Aggression; AGG-P)는 평균이 69.27(SD=12.77)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살해 여성들에게 있어서 공격성은 신경증적 특성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 두드러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남편살해 여성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 PTSD)**를 측정한 결과, PTSD 척도(Horowitz et al, 1979) 점수는 평균이 37.25, 표준편차가 7.38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진단의 기준점으로는 30점(Bryant & Harvey, 1996)이, 정신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35점이 기준점으로 적합하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Blake, Weathers, Nagy, Kaloupek, Klauminzer, Charney, & Keane, 1990). 국내의 경우 세브란스에 외상 후 장애로 입원하였던 환자집단을 대상으로 하여서도 평균이 39.10점, 표준편차가 10.01점인 점을 고려해 볼 때(세브란스병원 정신과, 2004; 이선미, 은현정, 1999) 남편으로부터 장기간 신체적 혹은 심리적 학대를 받았던 남편살해 여성들은 의미심장한 정도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경험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 결혼기간과 학대강도에 따른 남편살해 여성들의 심리상태

결혼기간이 남편살해 여성들의 심리상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결혼기간과 정서반응들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남편살해 여성들은 결혼기간이 길수록 심각한 인지적 우울( $r_{28}=.40, p<.05$ )과 생리적 우울( $r_{30}=.50, p<.01$ )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리적 우울이 결혼기간과 매우 유관하다는 사실은 학대의 경험이 신체화 징후로 이어지고 있음을 추정하게 해준다.

다음으로, 학대강도가 남편살해 여성들의 심리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

표 4. PAI에서 나타나는 남편살해 여성의 정신심리증후 T점수 평균 및 표준편차

구 분	종 류	평균 (표준편차)
SOM	SOM-C	88.20 (11.83)
	SOM-S	80.18 (10.48)
	SOM-H	89.45 (16.95)
	DEP-C	72.75 (11.46)
DEP	DEP-A	77.39 (11.69)
	DEP-P	87.32 (12.57)
	ANX-C	66.74 ( 9.22)
ANX	ANX-A	73.53 (10.36)
	ANX-P	75.22 ( 9.83)
SUI	SUI	80.57(15.12)
	AGG-A	67.50 (10.77)
	AGG-V	76.07 (10.93)
AGG	AGG-P	69.27 (12.77)

\* 팔호안의 내용은 표준편차임.

하여 재표준화 한 연구가 없었기에 일단은 변별기준점을 7점으로 받아들이기로 한다.

시하였다. 학대의 강도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 사실은 외상 후 스트레스(PTSD) 정도( $r_{31}=.41, p<.05$ )와 강력한 정적 관련성을 지녔다. 즉 학대강도가 심할수록 보다 만성적인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였다. 하지만 PAI의 하위 척도 점수와는 유관한 수준의 상관관계를 지니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요인(DAS)과 심리적 징후 간에는 언어적 공격성 만인 부적 상관을 지니는 것( $r_{31}=.42, p<.05$ )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들 중에서도 생명에 대한 위협이 강하고 오래된 경우 무기력에 익숙해져 폭력적인 남편에게 언어적 공격성조차 덜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 심층면접 분석 결과

본 절에서는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본 연구의 면접 요청에 응한 2 명으로부터의 진술을 내용 분석하였다. 사례 1은 28세에 결혼하고 혼인 4개월 만에 성관계

요구하는 남편을 살해하고 12년 형을 받은 후 7년째 복역 중이며, 사례 2는 20세에 결혼하고 2 명의 자녀가 있으며 결혼한 지 10년 후 외삼촌과 공범으로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기소되어 1,2심에서 모두 20년을 선고받은 후 3개월 째 복역 중이다. 수감 중인 여성의 경험한 폭력피해의 특성과 이의 결과 및 사법체계에서의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국내의 배우자 살해 여성의 특징과 이러한 사건에 대한 국내 사법체계의 실태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외국에서 실시중인 정신이상 및 정당방위 주장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폭력피해 경험

두 명의 사례에서 수집된 자료로서 언어적 학대, 때리기, 죽음의 위협(칼의 사용), 성적학대, 자녀나 다른 가족을 죽이거나 공격하겠다는 위협 등 폭력의 내용과 심각성이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정도와 상당부분 일치하

표 5. 학대의 유형에 따른 면담내용

학 대 유 형	면 담 내 용
언어적 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처증도 있었다. 잘못 걸려온 전화가 오면 심하게 의심하고 옮기기 힘든 심한 소리를 했다.</li> </ul>
신체적 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 전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서 날 때렸다. 때릴 때 주변에 있던 형수님도 말리고 아주버님까지 불러 와 말리곤 했다. 그 때 남편이 날 때릴 이유가 없었는데 왜 때렸는지 모르겠다.</li> <li>- 남편이 나를 때리는 것은 시댁 사람들도 목격했었고 살림이 어질러져 있는 것은 친가 동생들도 봤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애들도 봤던 것 같은데 아이들이 점점 커가자 잠이 들기를 기다린 다음, 또 때리곤 했다</li> <li>- 남편에게 그렇게 심하게 맞았지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고 물파스 등만 이용했다 남편이 간혹 약을 사 가지고 오곤 했다.</li> </ul>
성적 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사람이 특이해서 견디기가 어려웠는데 성관계 부분에서 이상했다. 여자가 생리하는 중에도 그런 관계를 요구했고, 하루에 몇 번씩이나 하자고 하는 것들. 나는 이런 것이 매우 힘들었다. 사건당일 성관계를 거절했는데도 남편은 알았다고 하며 자지 않고 계속 요구를 했다. 당시 방광염에 걸려 있어서 약을 먹고 있었는데 의사가 일주일동안은 성 관계를 갖지 말라고 얘기했다. 하지만 남편에게 멎히지 않았고 실랑이가 있었다 그래서 부엌으로 피해서 나왔는데 남편이 계속 하자고 달려들었고, 화는 굉장히 났지만 표현하진 않았었고 대신 칼로 위협을 하려고만 했다. 칼을 들고 냉에 들어와 침대 밑에 놓고 남편과 말다툼 하다가 찔렀다</li> <li>- 남편 성격이 약간 이상했는데 화가 나면 말 못하고 막 집어던지는 성격이었다. 처음엔 내가 말대꾸해서 내가 잘못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했고 그래서 순순히 들어주었는데 얼마 안되어 잠자리 관계에서 이상한 요구해 내가 거부했고 내가 짜증냈더니 바로 그때 내게 칼을 들이대면서 내 말만 잘 들으면 너 편안할 수 있는데 왜 말 안 듣느냐며 화냈었다... 사정한 후 정액 먹어보라고 하는데 그거 못 먹는다고 얘기한건데 칼을 들이댄 거다.</li> </ul>
심리적 학대 (가족에 대한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편은 평상시에 너 네 엄마 어떻게 하는지 보고 죽이겠다고 얘기했고 아버지도 죽이겠다고 얘기했었다</li> <li>- 재결합하면서 남편 행동 다시 심해졌고 친가에는 아예 가지 못하게 했으며 혼인 신고 후에는 너희 식구들 내가 가만히 둘 줄 아냐고 협박했고 친가 생일날에도 남편 몰래 갔었다.</li> <li>- 남편하고 이혼 1번 했다가 남편이 애들하고 죽는다고 협박해서 일주일 만에 다시 거기 들어갔다.</li> <li>- 남편이 새벽에 나가면서 삼촌을 죽이겠다는 얘기도 했었고, 내가 미리 전화해서 삼촌한테 도망가라는 얘기를 한 적도 있었다.</li> </ul>

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 생명에 대한 위협

면담 중 언급된 생명에 대한 위협의 정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무기사용 부분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말 잠깐 서운하게 한 것도 화가 나서는 집안을 다 부수고 벼룩 중 하나가 칼을 가져오는 거라서 결혼해서 내가 샀던 칼은 딱 하나밖에 없었다. 무서워서 다른 것은 사지도 못할 정도였다. 칼은 눈에 띠이지 않도록 숨기면서 살아야했다. 칼로 위협을 해도 날 죽이지는 않았으므로 그냥 하나의 벼룩처럼 생각하게 되었다. 날 찌른 적은 없었지만 내가 피하는 바람에 침대에 칼이 끗혔던 적은 있었다. 당시에는 내가 ‘피해서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었다.
- 사고 별생 3일전에 남편이 칼을 갖고 절에다가 갖다 대고 절 입구를 긋었다.
- 칼을 숨겨놔도 남편이 그걸 찾아내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쳤고, 모르겠다고 하면 남편이 가위를 갖고 나오곤 했다.
- 이혼했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간 후 때리고 맞는 건 늘 그랬으므로 별 생각 안했지만, 그 사람이 다시 칼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에는 내가 남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래서 결국 그를 죽인 것 같다.

### 폭력의 결과 : 심리상태의 변화

수감 여성의 진술내용에서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가정폭력의 피해자 특성을 상당부분 찾아볼 수 있다. 이들에게 나타난 심리상태의 특성을 진술내용과 함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이 여성들이 남편에 대해 가졌던 공포는 같이 사는 중에 매일 나타나는 현상이었으며, 무서운 남편과 살았던 것보다 감옥에 있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고 할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 그 사람은 항상 8시에 집에 온다. 근데 6시 정도 되면 내 심장이 딱 뛰기 시작하고 벨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공포심을 느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태연히 ‘왔어요?’라고 말했다.
- 그 사람이 무서웠던 게 절 힘들었다. 그러다보니 내 속마음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도 못하고 그 사람 눈치만 보고 그랬는데....여기 와서는 너무 마음이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그때 상황이 생각나서 무서워서 우는 거지 여기 상황이 힘들어서 우는 것은 아니다.
- 남편이 불만 있으면 말 하라고 했지만 말한 다음에는 바로 보복했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

② 폭력상황에서 길들여진 수동성과 무기력은 이들을 계속해서 폭력상황에 붙잡아두고 있었으며, 현저한 문제해결능력의 감소도 보였다.

- 그래서 내가 말만 잘 들으면 됐기 때문에 이후 다시 목포로 내려왔다
- 예 날 때 까지는 내 의견도 얘기했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고 그냥 순종하며 살려고 했다. 남편 때문에 빚이 생겨 힘들어도 아무 말을 안했다.
- 성 관계 등 해 달라는 거 요구했고, 요구를 들어주면 삼촌한테도 이렇게 했나 라고 계속 추궁했고 나는 다시 빌곧 했다.
- 다만 그 당시에 ‘죽고 싶다’ 등의 말만 간간히 했었을 뿐이었다. 결혼 자체도 내가 원한 결혼이 아닌 것처럼 이혼도 할 방법은 생각 못했다.
- 그 당시까지 혼인신고 안 되었기 때문에 헤어질 수 있었지만 주위 사람들 다 알고 있었고 친정아버지한테도 땡땡거리며 잘 살고 있다고 얘기한 상태였으므로 헤어질 생각조차 못했다.
- 내가 암에 걸려 6개월만 산다거나 차에 치여 죽는 게 낫다거나 도망갈까 생각해 본 적은 있어도....
- 수면제도 먹어봤다.

③ 수동성과 무기력과 같은 심리적인 요소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자녀에 대한 걱정도 폭력상황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 내 인생에서 행복이 될까라는 생각은 안 해봤고 애들 땜에~~애들 자랄 때까지만...그런 생각만 했다.
- 이혼 못하고 산간 엄마가 이렇게 우리들을 키웠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엄마 모습이 너무 불쌍하게 생각했었다. 그 당시 차라리 엄마보고 도망가라고 했지만 엄마가 너희들만 시집가서 잘 살면 된다고 했던 말이 생각나 나도 차마 아이들을 버릴 수 없다는 생각했다.

### 원조요청의 시도와 결과

가족을 비롯한 외부에 폭력사실을 숨기는 경향이 있었으며, 용기를 내어 믿을만한 사람한테 원조요청을 한 경우에도 참으라고 하고, 더욱이 지역사회의 관련기관에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주변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렇게 힘들었지만 부모님께 얘기 못했던 건 아버님이 이 결혼을 반대했었고 남자도 전라도 사람이라 더 반대가 심해서.. 이런 힘든 상황을 더더욱 부모님께 얘기 못했다.
- 맞고 사는 결 동생들이 눈치 채서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난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 아이를 가진 후 도망가겠다고 얘기했지만, 임신 한 체 도망가는 것은 답이 아닌 것 같았고... 중간에도 남편이 삼촌을 만나면 삼촌에게 오늘부터는 잘 할 거라고 얘기 했으므로 삼촌도 오늘부터는 웬찮을 거라고 참아보라고 했다. 계속 그런 반복이었다.
- 광주인가 목포에서 내 문제에 대해 상담소에 신고한 적이 있었는데 135~로 시작되는 번호 같고... 전화 받은 분에게 내 상황에 대해 말을 다하고 나니 결국 나중에는 '이쪽으로 전화해보세요'라는 말만 남겨 허탈한 느낌을 받았고 다른 곳에 다시 또 전화하기에는 맥이 풀려 있어 전화하지 않았다.

### 사건 발생 상황

첫 번째 사례는 결혼 4개월 만에 성관계를 요구하는 남편을 살해한 경우로, 사건발생 상황이 분명한 대면상황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할 만한 요건이 충분해보임에도 불구하고 12년 선고 받고 7년째 복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성관계를 거절했는데도 남편은 알았다고 하며 자지 않고 계속 요구를 했다. 당시 망광염에 걸려있어서 약을 먹고 있었는데 의사가 일주일동안은 성 관계를 갖지 말라고 얘기했다. 하지만 남편에게 먹히지 않았고 실랑이가 있었다. 그래서 부엌으로 피해해서 나왔는데 남편이 계속 하자고 달려들었고, 화는 굉장히 났지만 표현하진 않았었고 대신 칼로 위협을 하려고만 했었다. 칼을 들고 방에 들어와 침대 밑에 쌌고 남편과 말다툼 하다가 찔렀다. 남편을 몇 번 찔렀는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 당시 형사가 한 세 번 정도 찌른 것 같다고 얘기했다. 남편은 처음 한번 찔렸을 때 너무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남편이 칼을 빼고 베란다에 있는 내게 달려들며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다시 칼로 그 사람을 찔렀다. 그 당시 내가 남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기분을 느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죽였다. 이전에 그가 나를 죽일 것 같다는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지만, 지속적인 강한 성 관계와 의처증 등으로 그 사람이 내 남편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다.

두 번째 사례는 어릴 때 떨어져 지냈던 외삼촌과 공모하여 남편을 살해했다 하여 20년 형을 받은 상황이다. 남편 폭력에 견디다 못해 우연히 다시 만난 외삼촌에게 의지해서 살던 중 남편의 폭력에 대한 호소를 듣고 외삼촌이 찾아와 남편과 외삼촌이 서로 목을 조르며 다투던 중 칼을 달리는 외삼촌의 말에 칼을 가져다줌으로써 결국 남편이 살해된 사건이다. 법원에서는 폭력의 발생 약 1년 전부터 외삼촌과 성관계를 갖는 등 외삼촌과의 불륜이 남편 살해의 주원인으로 인식되어 외삼촌과의 관계 이전 장기간 동안 심각한 수준의 가정폭력 피해의 역사가 있었다는

점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외삼촌과의 관계를 불륜만으로 취급하여 엄한 처벌이 내려진 경우이다. 하지만 외삼촌에게 의존하게 된 경위도 가정폭력의 결과였다는 점을 고려하자면, 즉, 열흘에 한번 꼴로 10여 년 동안 일어난 가정폭력의 결과로 심적 고통과 죽음의 위협을 극심하게 겪고 있었지만 지원체계는 전혀 부재하였다 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이 여성의 도움을 청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은 외삼촌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명확해 보인다. 다만 연루된 사람이 하필 외삼촌이었다는 점만이 부각되어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사실은 제대로 이해되지 못한 사례로 보여 진다.

사건 당일 남편이 오늘 만큼은 나한테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똑같아서 다시 삼촌을 불렀고 ..... 남편과 방에서 다툼을 하던 삼촌이 불러서 다시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내가 독격한 것은 두 사람이 서로 목을 조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삼촌이 칼을 달라고 해서... 나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 순간 남편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었고, 삼촌에게 내가 칼을 집어 줬다.

### 사법체계에서의 경험

수사과정에 대한 경험을 요약하면, 수사관들이 믿어주지 않고 강압적이며, 사건의 담당자가 정황의 이해를 위해 관련 자료나 주변인의 참고진술 등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기보다는 사건 당사자에게 폭력의 피해역사를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며, 가정폭력피해가 만성화 되면 사실상 전문 치료기관에는 방문이 불가하다는 학제적 여성들의 상황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찰 조사 시 수사관은 다 남자였다. 당시는 변호인도 없고, 어린 시절부터 해서 물어 보길래 다 얘기했는데 나를 아주 절 나쁜 사람으로 몰았고.... 솔직하게 다 얘기하면 정상침착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사람 죽여놓고 무었을 바라나는 말만 들었다. 또, 재판과정에서도 속상했던 건 너무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초범이라 재판과정에서 사실 그대로 얘기하다 보니 오히려 믿어주지 않는 것 같았고 경찰들도 그랬지만 검찰조사에서는 더욱 무서웠다. 말하고 있을 때 거짓말 하지 말라고 내게 소리를 질렀고, 나중에는 내가 한 말이 아닌데도 지장을 짓으라고 협박을 했다.
- 다른 대안이 없어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상황을 검사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듯하였다.
- 그 당시 내가 우울증 증세가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치료받은 적이 있는지 그런 적 있다면 그것과 관련된 증

거를 요구했지만 그 당시에는 병원에 다닐만한 정신도 상황도 아니었기에 그런 증거자료는 없다고 했다.  
- 처음에는 우발적으로 죽이려는 생각을 갖고 죄를 생각 없었고 계속 성 관계를 요구하길래 짤렸는데, 다음으로는 남편이 칼을 빼어 그의 손에 칼이 들리자 있었고 너무 무서워서 내가 다시 칼을 빼앗아 남편을 다시 짤렸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병원에 가서 진찰도 받아보고 일기에도 적어놓을 것을 하는 생각도 듈다.

또한, 변호사 개인의 특성에 따라 변호의 질이 상당히 차이가 있으며, 빈곤계층의 경우 상황이 더 불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과정에서도 수사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살인 행동의 맥락에 대한 충분한 자료수집에 의한 적극적 변호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12년 형을 받았었다. 이것에 대해 많이 받았다는 생각은 안한다. 내가 너무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나를 알고 오던 분들은 제가 그런 행동을 한 데에는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나를 두둔했고 100명이 되는 신자들이 다 도장을 찍어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인천 지방 변호사 협회 회장이었던 변호사가 내 변임을 맡았는데 12년 형을 받고 탄원서를 내는 등 나름대로 애를 쓴 것 같다. 자주 교도소에 들어와서 봐 주셨고 얘기를 해주곤 하셨다. 사무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다. 1심에서 15년 형을 받았었는데, 2심에서는 그분께 다시 변호를 받아서 12년 형으로 내려간 거다.
- 현재 형은 20년 받은 상태이다. 1심에서 20년 받고 2심에서는 좀 깎아 줄 알았지만 똑같이 받았다. 변론 요지도 내가 다 작성해서 드렸는데, 변호인도 그냥 그것만 가지고 했다. 내가 진술한 부분(일 년에 한두 번 만난 정도) 그쪽에서는 지속적으로 보고 조사도 하지 않고 돈 없는 사람은 그냥 간단히 끝나더라. 가정형편도 어렵기 때문에 사비로 변호사를 두는 건 생각지도 못하는 상태이다. 당시 변호사도 돈이 없으면 안되고.. 세 번째도 돈이 없으니까 2심 담당한 분이 했는데 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건 우리나라 사회가 정상적이지 않다,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 변호사 만나면 일 년에 오백이라는 등 돈 얘기를 먼저 했다.

### 수감의 결과

배우자 폭력에 의해, 그리고 이 여성들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한 사법체계에 의해 이미 이중의 고통을 받은 가운데, 부모로서의 친권도 빼앗기고 자녀들에 대한 걱정으로 수감생활을 더욱 힘들게 해야 하는 고통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이들 걱정이 너무 크다. 동생이 처음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사건이 터지니까 시댁에서 보험금을 확

인했는데 보험혜택이 네 개 있었지만, 범행에 가담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친권이 넘어가서 시댁에서 데려갔다고 했다.

- 민사소송이 바로 들어왔는데, 사전변호사를 따로 둘 돈도 없었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가지고 있던 친권 바로 포기하고 돈과 아이들을 시댁에 바로 넘겨줬다. 아버님이 한번 아이들을 찾아 갔었는데, 시댁에서 보지도 말라고 해서 연락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들었다. 아이들이 너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변호사님 말 때문에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걱정이 된다.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나에 대한 기억보다는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이 더 깊을까 걱정이 된다.

### 결론 및 제언

우선 본 연구에서 설정하였던 두 가지 가설은 지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설문에 참여하였던 남편살해 여성들이 보고했던 남편의 폭력에 기인한 위험사정(Danger Assessment)은 외국에서 연구되었던 일반 피학대 여성들이 지각했던 위험수준의 변별기준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국내 피학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위험지각연구가 현재 부재하다는 점에서 보면 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타당도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DAS에 대한 국내 타당도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외국의 변별기준을 적용해보더라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경험하고 있는 듯하였다.

응답자들은 위험사정 이외에 측정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포함한 심리특성 상에서도 심각한 수준의 부적응적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이들은 평균 수준 이상의 건강 염려, 불안, 우울, 자살관념을 지니고 있었고, 높은 수준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경험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격성에 있어서는 얌전한 공격성을 제외하고는 일반인 수준의 공격성 요인점수를 보였다. 이런 결과는 남편을 살해한 여자들이 기질적으로 공격적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시각과는 불일치함을 확인하게 해준다. 이는 외국의 연구결과(O'keefe, 1997)에서 확인된 사실들과 일치한다.

피학대 여성들의 정신병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쉽게 찾아 볼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학대가 극에 달하여 결국에는 살인사건으로 종결이 난 사건의 주인공들이 연구대상인 연구물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 점에서 희소성이 본 연구가 지니는 첫 번째 의의일 것이다.

이 연구가 지니는 또 다른 의의는, 범인과 관련하여 단순한 인구사회적 지표 이상, 보다 심층적인 심리상태에 대한 이해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이다. 사건 후 이루어지는 사법판단을 포함한 일련의 판단과정 중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점은 사건의 주인공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범행을 저질렀을까 하는 점이다. 이 같은 측면은 결코 객관적 기준에 근거하여서는 평가될 수 없다. 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범죄와 관련된 상황적 맥락 속에서 당시를 회상하여야만 범행 시 피의자의 사고과정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책임의 귀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보자면 남편의 학대에 기인한 남편살해 여성들의 심리상태 및 사리분별 과정에 대한 이해는 이 논문과 같은 방법론을 택할 수밖에 없다. 즉 사건의 주인공들로부터 직접 심적 상태를 토로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일부 설문과 심층면접을 통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였다. 하지만 방법론상의 한계, 즉 이미 지나간 사건에 대한 회상기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문제는 범행 당시의 매우 사적인 심리상태에 대해 이해 할 수 있다는 강점과 더불어 불가피한 약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간 사건이기에 당시의 생생한 경험에 대한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상당히 불리 할 수 있다. 물론 결과분석에서는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대에 기인한 병리적인 심리상태가 반영되고는 있지만 이 부분을 해석하는 데에도 여전히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다. 예컨대 시설수용 자체가 충격이 되지는 않았겠는가 하는 점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 만큼은 거의 모든 응답자들이 교도소 생활이 오히려 더 편하고 체중도 많이 늘었다고 답했다는 사실에 근거해 볼 때 시설수용의 충격 때문에 심리변화가 야기된 것은 아닌 것 같다.

해석 상 주의를 기울여야 할 또 다른 문제는 응답에 관한 진실성 문제이다. 즉 사건의 당사자는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이 있을 터인데,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은 다만 살인사건의 가해자뿐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살인사건의 피해자에게 지각된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은 체, 가해자의 답변만을 근거로 이 연구에서는 진실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보다 확실한 결과를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피학대 여성 중 남편에게 가해행위를 시도했지만 남편의 생명에 손실이 없었던 사건에서 양 당사자

의 입장을 고루 청취하여 보는 일이 필요하다. 이 같은 확인 작업이 추후 이루어진다면, 이 연구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오랜 동안의 피학대가 자기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충동적 공격행위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보다 명확히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가정폭력에 기인한 위험요인에 대해 사정하도록 하는 DAS는 이번 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번역되어 준거집단에 적용되었다. 본 연구에 포함되었던 응답자들부터 얻어진 평균치는 약 9.1이었다. 이는 외국의 경우 남편의 폭력으로 아내가 살해될 만한 수준인 7점의 기준도 넘는 수준이다(<http://www.dangerassessment.com/WebApplication1/pages/psychometric.aspx>). 이렇게 계량된 기준을 적용하고 보면 가정폭력으로 신고 된 사건들에 있어서 앞으로는 개입의 수준과 전략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을 짐작하게 된다. 물론 우리나라의 가정폭력에 기인한 살인사건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이 같은 기준점에 대한 타당성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만일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하는 과제는 형사정책적 대안이다. 현재 경찰이 가정폭력 사건에 대응하는 전략을 보면 상당히 전 형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보다는 피해학대 여성들의 입장에 더 동정적이 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엄격한 대안을 적용하고 있지는 못하다. 하지만 만일 이 연구에서 소개된 것과 같은 위험성 평가지표를 현장에서 활용한다면 보다 상황에 적절한 방식의 형사정책적 행동전략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위험요인의 수준이 살인사건의 예측률을 이상일 경우에 있어서는 보다 강력한 법적 제지 및 강제수단 동원 등 범죄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만일의 범죄에 대해 예방하는 일이 이미 벌생한 사건의 정황이라도 이해해보고자 노력하는 것보다는 훨씬 우선되어야 할 당연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 참 고 문 헌

- 김영희, 박광배, 이재희 (2004). 여성 살인범의 특징, 범죄 이유, 그리고 재활 가능성 : 치료적 사법이념의 현실적 구현방안을 위한 심층면담 연구. 법무부 보고서. 서울 연합뉴스 (2005).
- 이명숙 (2005).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남편살해와 법 제도

- 적 검토, 서울여성의 전화 토론회 <가정폭력 피하여 성의 살인 VS 정당방위, 여성에게 생존의 권리 있는가?> 51-84.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ition),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Washington. D. C.
- Browne, A. (1987). *When Battered Women Kill*. MacMillan Press, New York.
- Browne, A., & Williams, K. R. (1993). Gender, intimacy, and lethal violence : trends from 1976 through 1987. *Gender Sociology*, 7, 78-98.
- Campbell, J. C. (1986). Assessment of risk of homicide for battered women. *Advances in Nursing Science*, 8(4), 36-51.
- Campbell, J. C. (1995). Prediction of homicide of and by battered women. In J. C. Campbell(Ed.), *Assessing dangerousness : Violence by sexual offenders, batterers, and child abusers*(pp. 96-113). Thousand Oaks, CA : Sage.
- Campbell, J. C., Webster, D., Koziol-McLain, J., Block, C. R., Campbell, D. W., Curry, M. A. Gary, F., Sachs, C. J., Sharps, P. W., Ulrich, Y., Wilt, S., Manganello, J., Schollenberger, J., Xu, X., & Frye, V. (in press). Risk factors for femicide in abusive relationships : Results from a multi-site case control stud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 Cascardi, M., O'Leary, D., & Schlee, K. (1999). Co-occurrence and correlate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major depression in physically abused women, *Journal of Family Violence*, 14(3), 227-249.
- Cohen, J. (1992). A power primer. *Psychological Bulletin*, 112, 155-159.
- Coolidge, Frederick & Anderson, L. (2002) Personality profiles of women in multiple abusive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Violence*, 17(2), 117-131.
- Dutton, M. A. (1992). Treating battered women in the aftermath stage. Special issue : Psychotherapy in independent practice. Current issues of clinicians. *Psychotherapy in Private Practice*, 10, 93-98.
- Dutton, M. A., & Goodman, L. A. (1994).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mong battered women : analysis of legal implications. *Behavioral Science and the Law*, 12, 215-234.
- Dutton, M. A., Hohnecker, L. C., Halle, P. M., & Burghardt, K. J. (1994). Traumatic responses among battered women who kill. *Journal of Traumatic Stress*, 7, 549-564.
- Golding, J. (1999). Intimate partner violence as a risk factor for mental disorders : a meta-analysis, *Journal of Family Violence*, 14(2), 99-132.
- Hamilton, G., & Sutterfield, T. (1997). Comparison study of women who have and have not murdered their abusive partners, *Women & Therapy*, 20(4), 45-55.
- Harnishakumari, N. (2000). Abused women who kill, *Lola Press*, 11, 48-62.
- Herman, J. L. (1992). *Trauma and recovery*. New York : Basic Books.
- Hilberman, E., & Munson, K. (1978). Sixty battered women. *Victimology : An International Journal*, 2, 460-470.
- Hilberman, E. (1980). The "wife-beater's wife" reconsidered.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7, 1336-1347.
- Housekamp, B. M., & Foy, D. W. (1991). The assessment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battered wome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6, 367-375.
- Hudson, W., & McIntosh, S. (1981). The assessment of spouse abuse : Two quantifiable dimens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873-885.
- Kaser-Boyd, N. (1993). Rorschachs of women who commit homicid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0 (3), 458-570.
- Kemp, A., Rawlings, E. I., & Green, B. L. (1991).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battered women : A shelter sample. *Journal of Traumatic Stress*, 4, 137-148.
- Maguigan, H. (1998). Review essay/ it's time to move beyond "battered woman syndrome", *Criminal Justice*

- Ethics, 17(1), 50-57.
- Mertin, P., & Mohr, P. (2000). Incidence and correlate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australian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15(4), 411-422.
- O'Keefe, M. (1997). Incarcerated battered women : a comparison of battered women who killed their abusers and those incarcerated for other offenses. *Journal of Family Violence*, 12(1), 1-19.
- O'Keefe, M. (1998).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mong incarcerated battered women : A comparison of battered women who killed their abusers and those incarcerated for other offense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1(1), 71-85.
- Ramos, B., Carlson, B., & McNutt, L.(2004). Lifetime abuse, mental health, and african american women, *Journal of Family Violence*, 19(3). 153-164.
- Schuller R. A., & Rzepa, S. (2002). Expert testimony pertaining to battered woman syndrome : its impact on jurors' decisions, *Law and Human Behavior*, 26 (6), 655-673.
- Slovenko, P. R. (2004). The watering down of PTSD in criminal law, *The journal of Psychiatry and Law*, Vol. 32/Fall, 411-438.
- Schuller, R. A. (2003). Expert evidence and its on jurors' decisions in homicide trials involving battered women. *Duke Journal of Gender Law and Policy*, 10, 225-246.
- Terrance, C. A. (2003). Undermining reasonableness : expert testimony in a case involving a battered woman who kill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7(1), 37-54.
- Terrance, C. A., Matheson, K., & Spanos, N. P. (2000). Effects of judicial instructions and case characteristics in a mock jury trial of battered women who kill, *Law and Human Behavior*, 23(2), 207-229.
- Walker, L. E. (1984). *The Battered Woman Syndrome*, Springer, New York.
- Walker, L. E. (1989). *Terrifying Love*, Harper Collins, New York.
- Zykorie, L. (2002). Can a domestic violence advocate testify as an expert witness? follow the ABC's of expert testimony standards in texas courts. *Texas Journal of Women and the Law*, 11, 275-302.

## An Empirical Study on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Battered Women who Killed Husbands

Soo Jung Lee

Kyonggi University

Social image of female murderers is dichotomized into ‘madness or badness’. However, this description is too simple since women who kill husbands have long history of being abused by their spouses. In this country, 82.9% among 133 female inmates who killed husbands at Chungjoo Women’s Prison have experience of being abused by their victims and 44.5% among them reported being battered as their major motive of killing spouses. This study intended to explore how battered women’s perspectives and psychological features might be changed. Analyzed results present the level of being abused was very serious. As a result, mental health problems got deteriorated. They suffered from psychosomatic symptoms, anxiety, depression, and suicidal temptations. However, their aggression level was not so high compared to general population. This implies their aggression level didn’t fit stereotypes of violent murderers. All these characteristics got deteriorated up to respondents’ marital duration and intensity of being abused. As being abused got wors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became worse and they experience greater danger of their own life and their kids’. These results imply that battered women’ killing their spouses might be caused not by insanity but by motive to defend themselves and their kids.

**Key words :** Battered Women, Exaggerated Danger Perceptio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ggression

원고접수 : 2006년 3월 15일  
심사통과 : 2006년 4월 5일